

청주지방법원 2023. 6. 14 선고 2022가단700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

담당변호사 전희태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4. 26.

판 결 선 고 2023. 6. 14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0. 9. 3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D에게 청주지방법원 2020. 9. 4. 접수 제114105호로
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들의 피보전채권

1) D은 2019. 2. 23. 07:00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'F' 앞에서 도금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화금가리(도금용제)가 들어 있는 삼다수 물병 2개를 아무런 표시 없이 자신의 승용차 뒷자석에 실어 두었는데, 망 G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가 같은 날 11:15경 위 승용차 뒷자석에 승차하였음에도, 망인에게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과실로 이를 생수로 오인한 망인으로 하여금 청화금가리를 음독하게 하여 같은 날 17:18경 망인을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.

2) 이로 인하여 D은 2020. 6. 17. 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금고 8월,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(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325호),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. 12. 10. 그 항소가 기각되어(청주지방법원 2020노716호), 2020. 12. 18.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3)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,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, 원고들은 2020. 8. 21.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325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12. 10. "D은, 원고 A에게 189,770,259원, 원고 B에게 138,731,2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. 2. 23.부터 2021. 12. 10.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"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22. 1. 4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D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

한편, D은 2020. 9. 2. 원고들이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송달받았는데, 그 다음날인 2020. 9. 3. 피고와 사이에,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

한다)을 체결한 후,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다. D의 재산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.

1) 적극재산

- ① 가액 170,00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
- ② 가액 9,000,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
- ③ 가액 2,500,000원 상당의 승합차 1대
- ④ 가액 800,000원 상당의 가사비품

2) 소극재산

- ① H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(채권최고액 84,000,000원) ②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(원금 189,770,259원),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(원금 138,731,226원)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 및 악의의 추정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D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인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,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), D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,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D에게 80,000,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,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채권의 담보로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D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인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,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다.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성률